

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산업건설위원회 (2014.03.07)

#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  
[김 정 욱]

# — 목 차 —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4 ~ 13	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안	2
2014 ~ 14	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	5
2014 ~ 15	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	8

#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2. 28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 일자 : 2014. 02. 28.

### 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)
  -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·운영
  - 단,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의무화
- 나.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)
  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·운영
  -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,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
- 다.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정(안 제7조)
  - 통합지휘소의 장(부군수)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

- 라.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8조 ~ 안 제21조)
  - 상황전파, 현장출동, 현장조치, 긴급복구 단계별 대응절차 및 임무 수행
- 마.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하여 정함(안 제22조 ~ 안 제23조)
  -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 전환을 위한 인력·장비 재배치  
⇒ 복구활동 시작 시 통합지휘소 철수

## 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(2) 입법예고
    - (가) 예고기간 : 2013. 12. 10. ~ 12. 29.
  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(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'13. 8. 6. 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르면 재난현장의 총괄·지휘를 위하여 시·군·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같은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
- 지역내 각종 재난·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재난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을 준용하여 재정하는 것으로서

-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 : 관련법령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·운영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대책본부나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-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(이하 "통합지휘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,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·군·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.
-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2. 28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 일자 : 2014. 02. 28.

## 2. 제안이유

- 201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, 융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3조)

- 기금구성 목표액 200억원,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 의무규정 삭제함

### 나. 이차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함(안 제8조제3항제2호, 제12조)

### 다.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을 변경함(안 제11조제1항·제2항)

- ①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 변경(1천만원 이하 ⇒ 3천만원 이하)
- ② 시설자금의 융자조건 변경(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⇒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
라.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함(부칙 제2조, 제3조)

- ① 경과조치: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융자기간의 적용례 :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.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2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1. 10. ~ 2014. 1. 31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과 융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,
-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참고자료 : 관련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

#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02. 28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 일자 : 2014. 02. 28.

## 2. 제안이유

-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표준안 준용
- 농기계 임대료 하향조정
-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한 임대농기계 선정 등 명시(안 제6조제4항)
  - 임대수요가 확보되지 않거나 임대유형에 부적합한 기종 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구입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임대사업 효율성 증진 확보
- 나. 임대대상 범위를 확대함(안 제9조제3항)
  -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 경작지가

있는 농업인까지 임대대상 확대

다.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농업인 부담경감 시킴(안 별표)

- 농기계 구입가격이 1,000천원 미만인 경우 1일 임대료 : (현행) 1만원 ⇒ (개정) 5천원으로 하향조정

라. 심의위원회 명문화(안 제19조 ~ 제22조)

-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문화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규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, 제8조의2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
나. 예산조치 : 422백만원(2014년 본예산 확보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01. 17 ~ 2014. 02. 06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하고,

- 농기계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국민권의 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를 통해 임대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 : 관련법령

### □ 농업기계화촉진법

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(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(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부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 인력의 확보,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